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

이 책자는 「중견기업법」 제23조에 따른 중견기업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신규 지원 중단 또는 접수 마감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중견기업 정의	1
1. 중견기업	4
2. 특례대상 중견기업	5
3. 중견기업 후보기업	5
4. 중소기업 유예기간	8
5.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8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9
7.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9
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11
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2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3
11.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14
II. 부처 및 유관기관	15
1. 산업통상자원부	17
2. 중견기업 전문기관	17
III. 중견기업 지원시책	19
(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1
1.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23
2.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웨비나 및 상생라운지	23

Contents



3.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배정	24
4.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24
5.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연구인력 활용 기술 자문)	25
6.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25
7. 중견기업 확인제도	26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6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
1.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29
2. DX 한걸음 프로젝트	29
3.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30
4.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30
5.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31
6.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31
7. 수출연계형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R&D)	32
8.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32
9.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33
10.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R&D)	33
11.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34
12.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34
1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35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p>※ 산업기술혁신사업은 본 책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등에서 통합 시행계획 공고 및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div>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7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39
2. 해외지사화 사업	39



3. (통합형 수출바우처) 그린 선도기업 육성	40
4. (통합형 수출바우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40
5. (통합형 수출바우처)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41
6. (통합형 수출바우처)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41
7. (통합형 수출바우처)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42
8.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42
9. 글로벌 ESG+ 사업	43
10.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사업	43
1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IP-DESK)	44
12.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44
(4) 한국무역보험공사	45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47
2. 수입보험	47
3. 수출신용보증(매입)	48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48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9
1.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51
2. 시바우처 지원사업	51
3.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52
4.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52
5.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53
6.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53
(6) 한국에너지공단	55
1. 그린크레디트	57
2.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57
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8

Contents



4.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58
5.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59
6.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60
7.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0
(7) 한국산업은행	61
1.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63
2. KDB Global Challengers 200	63
3.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64
4.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3종)	64
5. KDB 동반성장대출	65
(8) 한국수출입은행	67
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69
2.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69
3. 수입금융(수입자금)	70
4.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70
5.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71
6. 해외사업자금대출	71
7. 해외투자자금대출	72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72
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73
10.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73
(9) IBK기업은행	75
1. 강소기업대출	77
2. 동반성장협력대출	77
3.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78
4. 시설투자대출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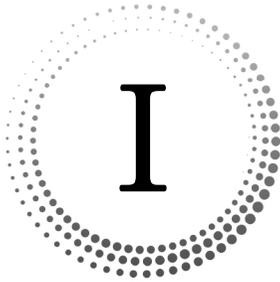
5.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79
6. 토지분양협약대출	79
7.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	80
(10) 신용보증기금	81
1. 유동화회사보증	83
2. M&A보증	83
3. 매출채권보험	84
4.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84
(11) 기술보증기금	85
1. 기술보증제도	87
2. 기술이전제도	87
3. 지식재산 공제제도	88
4.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88
(12) 한국디자인진흥원	89
1. 제조기업 디자인인력 지원사업	91
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91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93
1.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95
2.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96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97
(1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99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101
2.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사업	101
3. R&D 특허·표준 연계 지원	102

Contents



(15) 한국자산관리공사	103
1.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105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05
(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7
1. 내일채움공제	109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09
3.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110
(17) 기타기관	111
1. (특허청) 지식재산권 수수료 감면제도	113
2.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113
3.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114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14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115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115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116
8.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116
9.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117
IV. 중견기업 특례(요약)	119
1. 분야별 세제 특례	121
2. 분야별 지원 특례(세제 외)	123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



중견기업 정의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주요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소(유예)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AND)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기업	4개 중 1개 충족(OR)	2개 중 1개 충족(OR)
규모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기준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 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을 부여함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집단 편입 및 제외 공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담당 및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www.mss.go.kr)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가능함

1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해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아래 ①~⑧의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법,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 중견기업 제외대상 】

- ①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다출자자에서 제외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⑥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 ⑧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 상기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의 확인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메뉴를 참고하기 바람

2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함

[중견기업 특례 요건]

- ①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 ※ 단, 특례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상이하므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9조의8을 확인하기 바람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작성시, 특례대상 확인여부에 '예'를 선택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에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이미 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1:1문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하기 바람

3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받아야 함

[참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주된 업종별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매출액 550억원 이상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비교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로 한다.

※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2조제4항제2호 관련)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유예 등)'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유예 등)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검토하여 부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발급받아야 함

5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함

[사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2014. 4. 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15. 1. 1.)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검토하여 부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견기업 진입 1~3년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 요건]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람

7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중 주된 업종별 연간 매출액이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의 제1항~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중견기업(수급사업자)이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3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봄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원사업자) 요건]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①’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2조원)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받을 수 있으나, 동 확인서 내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충족여부’는 명시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000억원 미만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2,000억원 미만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200억원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미만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800억원 미만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 비교

1.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해당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중견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4 관련)

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법인세제과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천억~5천억원 미만, 업종 제한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바람

* 조세특례 :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

-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알기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또는 중견기업 정보 마당(www.m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정책총괄과 등

- 「고용보험법」에서는 산업 분류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함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 비교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 동 법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역시, 대기업의 일부로 분류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게 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대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에만 사업금액의 하한을 다르게 적용하며, 이 외의 중견기업은 대기업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2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받을 수 있으나, 동 확인서 내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여부'는 명시하지 않음
 - 따라서,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및 중견기업 확인서를 매년 발급받아 연도별 기업 규모를 증빙하기 바람

11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K)을 중견기업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를 모두 금융 및 보험업(K)으로 분류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하지만 중견기업의 모든 지주회사들이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호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중견기업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바람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여부 확인 절차]

- ①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호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자산총액 등) 충족 여부 확인
 - * 지주회사 :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 * 일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 ②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전환 신고 여부 확인

- 중견기업의 지주회사(홀딩스) 행위를 하더라도, 상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K)으로 분류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



부처 및 유관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 중견기업 관련 정책 총괄 및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연구개발 지원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안내 및 문의 : www.motie.go.kr / 1577-0900

2 중견기업 전문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관소개 : 중견기업을 위한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정책건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안내 및 문의 : www.fomek.or.kr / 대표번호 02-3275-2985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번	연합회 회원사 가입	5번	기술·생산성 혁신 지원사업
2번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6번	디지털혁신센터
3번	제도 및 정책 문의	7번	중견기업 홍보 지원
4번	일자리·고용지원 사업	0번	기타 문의

중견기업 정보마당 안내 및 문의 : www.mme.or.kr / 대표번호 02-3275-2994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번	시스템 이용 장애	4번	중견기업 범위 기준·제출서류
2번	시스템 회원가입·가입정보 조회	5번	중견기업 통계·실태조사
3번	확인서 발급내역 조회·내용변경	6번	기타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투자진흥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otra.or.kr / 1600-7119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관소개 : 무역·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sure.or.kr / 1588-388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관소개 :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at.or.kr/ 02-6009-300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dp.or.kr / 031-78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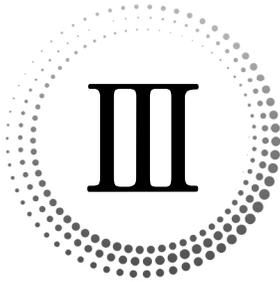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 www.tipa.or.kr / 1357 또는 042-388-0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관소개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정책자금 융자, 인력양성 사업지원 등 원스톱 종합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osmes.or.kr / 1357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



중견기업 지원시책



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2.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웨비나 및 상생라운지
3.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배정
4.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5.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연구인력 활용 기술 자문)
6.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7. 중견기업 확인제도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1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제도개요

- 핵심인재 대상 교육 과정 개설을 통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임직원

☑ 지원내용

- 디지털 전환 실무과정 : 디지털 기초 역량교육, 맞춤형계형 심화교육 등
- ESG 전문가 과정 : 지속가능경영 과제, 기업 전략, 감독 및 집행, 공시 등
-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과정 : 특허 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경영, 기술사업화 등
- ※ 상세 교육 과정은 홈페이지 교육 안내 참고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 ☎ 02-3275-3091
-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 academy.fomek.or.kr

2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웨비나 및 상생라운지

☑ 제도개요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최신 트렌드 교육, 기술 보유 스타트업과의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임직원, 스타트업

☑ 지원내용

- (웨비나) 총6회 / DX 주요 기술 활용사례, 디지털 혁신 사례 및 노하우, 패널 토의 등
- (상생라운지) 총4회 / 디지털 전환 이슈 및 애로사항 공유,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IR 등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 : ☎ 02-3275-0175

3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배정

☑ 제도개요

- 병역 자원의 일부를 선정 기업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자격

-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영위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공장 지정 가능하며, 업종별 상세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우선 배정 및 보충역 23개월 고용 보장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 ☎ 02-3275-0102
- 병무청 산업지원과 산업기능요원 담당 : ☎ 042-481-2816

4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 제도개요

- 중견·중소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필요기술을 적시에 확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복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시스템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의뢰한 기술문제에 대하여 출연연·대학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업이 최적의 솔루션을 채택 후 보상금 지급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 ☎ 02-3275-2219
-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K-TechNavi) : 🌐 www.k-technavi.kr

5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연구인력 활용 기술 자문)

☑ 제도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공공연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기술역량 강화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공공연)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36개 공공연

☑ 지원내용

- 기업당 1명(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6개월~1년
- 중소기업 67%, 중견기업 50% 자문인력 인건비 국고 지원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 ☎ 02-3275-2219

6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 제도개요

- 사업전환(업종전환·업종추가) 수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통해 원활한 신사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단,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제외

☑ 신청자격

- 3개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주식교환, 합병 관련 기간 단축, 분할 및 합병 절차 간소화, 타당성 검증 지원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 ☎ 02-3275-2217

7 중견기업 확인제도

☑ 제도개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며, 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활용 가능(연중 상시 신청)

☑ 확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 중견기업의 상세 범위는 본 책자 1. 중견기업 정의 참고

☑ 확인절차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을 통해 신청 및 발급(출력)이 가능하며, 사업장 본점의 전자거래비용, 은행용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전용 공동인증서 필요
※ 확인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참고

☑ 문의처

- 중견기업 정보마당 : ☎ 대표번호 02-3275-2994 🌐 www.mme.or.kr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제도개요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3~4월 신청)

☑ 확인대상

-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현판제작 부착 및 마크 활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매체 홍보,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 02-3275-3093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2. DX 한걸음 프로젝트
3.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4.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5.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6.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7. 수출연계형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R&D)
8.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9.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10.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R&D)
11.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12.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1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1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 지원개요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분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12개 분야 223종 신성장·원천기술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산업에 필요한 기술

☑ 신청자격

- 「기업활력법」에 따라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 과잉공급 완화, 산업위기지역, 신산업 진출 유형(R&D 총사업비 7억원 미만)의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과제당 4.5억원 내외, 1년 지원
 ※ R&D 총사업비 중 중소기업은 67%, 중견기업은 50% 이내 정부 부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 ☎ 02-3485-4045 ✉ lgh0604@kiat.or.kr

2 DX 한걸음 프로젝트

☑ 지원개요

- 디지털 전환(DX) 연구 개발 및 성공사례 확산 지원

☑ 지원분야

- 10대 분야의 데이터 활용 연구 개발
 ※ 기계로봇, 섬유화학, 에너지,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헬스케어, 조선, 철강, 뿌리

☑ 신청자격

- (주관) 대·중견·중소기업 (참여) 대·중견·중소기업, SI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 컨소시엄

☑ 지원내용

- AI·데이터를 활용한 유형화된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
- 과제(10개)당 연 6.5억원, 2년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 ☎ 02-6009-44355 ✉ ncseo@kiat.or.kr

3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 지원개요

- 신기술·제품을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초기시장 진출과 활성화 도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신청자격

- (주관) 중소·중견기업 (참여) 기업, 비영리기관, 공공수요처 등

☑ 지원내용

- 양산수준의 기술·제품개발·실증·공공조달 연계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 02-6009-4363 ✉ pjo8410@kiat.or.kr

4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 지원개요

- 우수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분야 진출 촉진

☑ 지원분야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및 한국형 뉴딜 분야

☑ 신청자격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 필수 등

☑ 지원내용

-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및 시제품 고도화,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및 표준화 등
- 과제(16개)당 4.78억원 내외, 1년 지원
 - ※ 총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중소기업 기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 ☎ 02-6009-4345 ✉ mchoi@kiat.or.kr

5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추진

☑ 지원분야

- 산업기술 전 분야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관계·피출자 기준을 충족한 중견기업
 - ※ 1)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3)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 지원내용

- 중견기업과 모기업, 외부 혁신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신사업·신산업 분야 진출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2년 지원
 - ※ 정부 50% 이하, 민간 50% 이상 /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투자 의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 02-6009-3505 ✉ hjeong1219@kiat.or.kr

6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 지원개요

- 국산 솔루션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중견기업 및 산업생태계 확산

☑ 지원분야

- 제조공정 및 경영 분야

☑ 신청자격

-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중견(후보)기업

☑ 지원내용

- 실증 효과과 입증된 우수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 02-6009-3506 ✉ hjcho@kiat.or.kr

7 수출연계형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R&D)

☑ 지원개요

-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강화

☑ 지원분야

-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신청자격

- 자동차 부품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내용

- 신에너지 관련 차량 핵심부품 기술개발, 내연기관 부품의 친환경화 지원
- 해외시장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 02-6009-3511 ✉ heydam@kiat.or.kr

8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 지원개요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후보)기업의 성장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 신청자격

- 매출액, 수출비중, R&D 집약도, 5개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조건을 충족한 중견(후보)기업

☑ 지원내용

-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과제당 최대 4년, 40억원 이내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 02-6009-3546 ✉ sumin.jeong@kiat.or.kr

9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지원개요

- 중견(후보)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연계 및 공동 R&D 프로젝트 지원

☑ 지원분야

- 디지털 혁신 분야

☑ 신청자격

- 중견(후보기업) 또는 대학* 컨소시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시대학원 프로그램 및 SW중심대학 사업 수행 대학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간 최대 6억원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 02-6009-3513 ✉ sonhyo1125@kiat.or.kr

10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R&D)

☑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성장사다리 연결을 위한 R&D 모델 마련

☑ 지원분야

-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 신청자격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이내, 최대 10억 이내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 02-6009-3542 ✉ limjian@kiat.or.kr

11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 지원개요

- 성장 정체 중견기업 및 중소 회귀 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분야 중견기업 및 중소 회귀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또는 최근 5년 이내 중소 회귀 기업

☑ 지원내용

- (1단계)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 과제당 0.5억원 이내 (12개월 기준)
- (2단계) 핵심기술 R&D 지원 : 과제당 5억원 이내 (12개월 기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 02-6009-3501 ✉ krecom@kiat.or.kr

12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 지원개요

-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분야

-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 분야, 5대 신산업분야 영위 기업 가점 부여

☑ 신청자격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면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견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이공계 출신 인력을 채용한 기업
 - ※ 청년 석·박사 : 만19~39세,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예정 포함)인 자
 - ※ 고경력 :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인건비 최대 3년간,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인원 제한, 지원한도 있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 02-6009-3541 ✉ sun@kiat.or.kr

1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 지원개요

- 지역 중견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분야

- 지역 주력산업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소재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 * 1)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수도권 제외)의 지자체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고,
2) 직전년도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중앙정부) 기업당 최대 4억원/연, 2년간 R&D 지원 (중견기업 5개사 선정)
- (지자체) 비R&D(금융, 수출, 인력, 고용, IP 등) 지원(기업당 20% 부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 02-6009-3547 ✉ sunyp@kiat.or.kr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2. 해외지사화 사업
3. (통합형 수출바우처) 그린 선도기업 육성
4. (통합형 수출바우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5. (통합형 수출바우처)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6. (통합형 수출바우처)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7. (통합형 수출바우처)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8.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9. 글로벌 ESG+ 사업
10.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사업
1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IP-DESK)
12.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지원개요

- 퇴직 무역전문가를 매칭하여 무역 실무부터 해외 거래선 발굴, 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요건 : 1)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또는 10만불 미만 기업, 2)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 지원내용

- 수출전문위원 매칭 맞춤형 멘토링, 바이어 발굴, 온라인 마케팅, 유관기관 연계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 ☎ 02-3460-7545 ✉ 2022export@kotra.or.kr

2 해외지사화 사업

☑ 지원개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출전문위원 매칭 맞춤형 멘토링, 바이어 발굴, 온라인 마케팅, 유관기관 연계 지원

단계	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6개월	70만원	세계한인무역협회
발전	마케팅 및 수출 준비 지원	6개월	22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년	300~4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1년	665~84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 ☎ 02-3460-7439, 7441, 7445 ☎ www.exportvoucher.com

3 (통합형 수출바우처) 그린 선도기업 육성

지원개요

-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신청자격

- 재생에너지, 수소, 모빌리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효율,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바우처 총액 : 확대(3천만원, 5천만원 中 택1), 발전(6천만원, 1억원 中 택1) / 중소 70%, 중견 50% 국고 지원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팀 : ☎ 1533-4323 🌐 www.exportvoucher.com

4 (통합형 수출바우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유형	요건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예비 중견기업' 中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Jumping 중견 글로벌	중견기업 후보기업, 예비 중견기업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300 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중견기업
Post 중견 글로벌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 각 요건별 정의는 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공통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진출 멘토링 지원, 해외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등

유형	횟수	바우처 총액(최대)	국고 지원 비율
내수중견	3회	1억원	70%
Jumping 중견 글로벌	5회	1억원	
중견 글로벌	5회	중소 1.3억원, 중견 2억원	중소 70%, 중견 50%
Post 중견 글로벌	3회	2억원	30%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소중견기업팀 : ☎ 02-3460-7238, 7247 🌐 www.exportvoucher.com

5 (통합형 수출바우처)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발전 지원

☑ 신청자격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 바우처 총액(최대) : 확대(5천만원~1억원), 발전(6천만원~1억원) / 중소 70%, 중견 50% 국고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팀 : ☎ 1533-4323 🌐 www.exportvoucher.com

6 (통합형 수출바우처)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소비재 제조 선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신청자격

- 5대 소비재 제조 기업(단순 무역상사 제외)
 - ※ 소비재 :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 바우처 총액(최대) : 5천 5백만원 / 중소 70%, 중견 50% 국고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팀 : ☎ 1533-4323 🌐 www.exportvoucher.com

7 (통합형 수출바우처)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국내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 신청자격

-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분야 :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기타 서비스(AI, 핀테크, 생활편의 등)

☑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바우처 총액(최대) : 5천만원 / 중소 70%, 중견 50% 국고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팀 : ☎ 1533-4323 🌐 www.exportvoucher.com

8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지원개요

-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 신청자격

- 국내에서 수출 중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국제 운송비(항공·해상 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료)
※ 바우처 총액 : 1천만원, 2천만원 중 택1 / 중소 70%, 중견 50% 국고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팀 : ☎ 1533-4323 🌐 www.exportvoucher.com

9 글로벌 ESG+ 사업

☑ 지원개요

- 우리 기업의 ESG 활동 지원을 통한 현지 사회문제 해결 및 기업 인지도 제고

☑ 신청자격

- 해외 ESG 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 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지원내용

사업방식	세부내용	최대 지원 한도
(유형) 제품·장비·기자재 기부	자사 제품, 장비 및 기자재 현지 기부	1,500만원
(무형) 기술·서비스 교육	기술·서비스 경험 전수 또는 교육 제공	
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리해 신흥국에 기증,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 전수	5,000만원
맞춤형 재난, 보건·의료, ODA 연계 프로젝트 사업	긴급 재난, 재해 대응 구호, 의료 물품, 장비 기부 (의료장비(특수장비)의 경우 1,500만원 限)	500만원
	개발협력사업(ODA, KSP, EIPP 등), 공공조달, 방산(G2G) 등 프로젝트 연계 관련 글로벌 ESG 활동 지원	1,500만원

* 운반보관비 및 소요 기자재, 외부 강사 항공임, 체재 지원비, 강의료 등 비용, 행사 개최비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발협력실 : ☎ 02-3460-7532 ✉ csr@kotra.or.kr

10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사업

☑ 지원개요

- 국내 유망 기업의 세계 주요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해외 직·간접 조달 목표시장에 적합한 품목 보유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1천만원 내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비용 지원
※ 참가비 300만원(VAT포함)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후변화대응팀 : ☎ 02-3460-7494

1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IP-DESK)

☑ 지원개요

- 11개국 17개소에 소재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 지원

☑ 신청자격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IP-DESK 소재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지원	최대 50%, 기업별 연간 10건 지원(국가별 한도 상이)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중소기업 최대 80%/중견기업 최대 60%, 기업별 연간 3건 지원(한도 최대 1만불)
IP-DESK 미소재	출원지원	비용 50%, 기업별 연간 4건 지원(한도 1천5백불)
	분쟁대응	비용 70%, 기업별 연간 1건 지원(한도 3천불)
	침해조사	비용 70%, 기업별 연간 1건 지원(한도 6천불)
	행정단속	비용 70%, 기업별 연간 1건 지원(한도 4천불)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 : ☎ 02-3460-3357, 3359 ✉ ip-desk@kotra.or.kr

12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지원개요

-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KOTRA 협력 물류사 창고 공동 이용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 현지창고 보관,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최대 5개 지역)
※ 매칭펀드 지원(중소 70%, 중견 50% 국고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 ☎ 02-3460-7445, 7430, 7426



4

한국무역보험공사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2. 수입보험
3. 수출신용보증(매입)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 지원개요

-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 신청자격

-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K-SURE 기준)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백만불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위험별 책임한도	U\$50천~1백만 * 최소책임금액 : U\$10천	담보 안함~U\$3백만 * 최소책임금액 : U\$10천
보상비율	100%	90% 이내

*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2 수입보험

☑ 지원개요

-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금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금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신청자격

-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D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공사의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지원내용

구분	내용(수입자용, 한도책정방식)
보험증권 유효기간	별도의 중단통보가 없는 한 기한제한 없이 회전방식으로 운영 (단, 한도책정 후 최종 선금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한도 소멸)
보상한도	수입계약상대방의 총액한도 범위내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사항, 향후 거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책정
보험요율	연간 0.36% ~ 1.26%(수입계약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거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중견기업지원사업

3 수출신용보증(매입)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격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수입자용, 한도책정방식)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보증비율	90% 이내
보증요율	수출자·수입자 신용등급, 결제조건, 통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신청자격

- KED 신용등급 B-이상인면서 공사가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수입자용, 한도책정방식)
보증비율	기본 90%
보증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증서 유효기간 종료시 재보증심사를 통해 연장)
보증한도	수출자의 연간 통관수출실적 기준으로 책정 업체당 최대 U\$500만
보증요율	보증한도 U\$10만 이내 : 연율 0.4% 보증한도 U\$10만 초과 : 연율 0.5% 내외(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

*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2. AI바우처 지원사업
3.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5.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6.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1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 전문(공급)기업의 유망 솔루션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디지털 전문기업 육성

☑ 신청자격

-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 중소·중견기업 (→실증 수요처는 전문(공급)기업이 제시)

☑ 지원내용

- 커스터마이징, 실증, 상용화 관련 중소 75%, 중견 60% 국고 지원
- 현지 서비스화 및 비즈니스 연계 등 해외 진출 지원
- 결과물 평가를 통한 국내 수요처 보급 및 확산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 ☎ 043-931-5557 🌐 www.nipa.kr

2 시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개요

- AI 제품·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 신청자격

- 공급기업 : Pool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자체 AI 솔루션 보유 국내기업(법인에 한함)
- 수요기업 : 국내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법인에 한함), 의료법 상 의료기관인 경우

☑ 지원내용

- AI 솔루션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하고, 비용은 시바우처로 지급(과제당 최대 3억원 한도)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1544-3816 🌐 www.nipa.kr

3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지원개요

- 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활용, 설비 운영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등 제조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 신청자격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기관으로 구성)
 - ※ 공급기업 : 인공지능(주관), 데이터 가공, 에너지 분석·컨설팅(참여) 등 영위 중소·중견기업
 - ※ 수요기업 : 광주첨단, 인천남동, 구미, 여수, 대구성서 산단 내 중소·중견 공장

☑ 지원내용

-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성과제고
- 과제별 12.4억원 이내(중소 80% 이하, 중견 70% 이하, 공기업 및 기타기업 50% 이하, 그 외 100% 이하 국고 지원)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oT산업팀 : ☎ 043-931-55714 🌐 www.nipa.kr

4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 지원개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SW 오작동 문제 등을 사전 진단 및 개선 지원함으로써 잠재적인 SW 안전 위협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

☑ 신청자격

-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 SW를 개발, 운영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민간기업(중소·중견기업 우대) 또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 시스템, 운영기반 프로세스 안전성 항목 무료 진단 및 개선 지원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기술팀 : ☎ 043-931-5465 🌐 www.nipa.kr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스템안전센터 : ☎ 031-780-9281

5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현안을 SW공학기술 도입·적용과 내재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SW품질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수행기업)과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
※ 단,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1차년도)SW공학기술 도입·적용 (2차년도)개선 및 내재화 지원
- 과제당 1.3억원 이내(민간부담금은 25% 이상 유지 필수)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기술팀 : ☎ 043-931-5472 🌐 www.nipa.kr

6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발전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상용 서비스 가능성 확대

☑ 신청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견·중소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단,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 과제당 4.3억원 이내(대 50%, 중견 70-75%, 중소 80% 이내 국고 지원)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신산업팀 : ☎ 043-931-5084 🌐 www.nipa.kr



6

한국에너지공단

1. 그린크레딧
2.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5.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6.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7.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 그린크레딧

☑ 지원개요

-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이 대기업·공공기관(규제 대상)의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규제대상 기업은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

☑ 지원대상

- 사업주체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 ※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45%(최대 7,000만원) 이내
 - ※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의 설치 및 구축 비용 등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114 🌐 www.energy.or.kr

2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개요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컨설팅 등을 통한 스마트 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사업 총 투자비의 70%(중소기업) 40%(중견기업),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052-920-0114) 🌐 www.energy.or.kr

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개요

- 에너지절약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대기업 ESCO(중소·중견 사업자를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경우)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억원)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ESCO투자사업		3,038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절약시설 설치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장기사용열수송시설개체사업	50	50억원 이내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114 🌐 www.energy.or.kr

4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지원개요

-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장에 대응역량향상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 산업·발전 부문 중소·중견 규모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제도 대응 컨설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114 🌐 www.energy.or.kr

5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지원개요

-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 선도

☑ 지원대상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중기업) 및 비영리 법인 사업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신규제안설비 등 2종 이상의 복수품목
- (지원 사업)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geq 5\text{kW}$ 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 전자민원 효율향상 → 1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신청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114 🌐 www.energy.or.kr

6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개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을 종합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 지원내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중견 50% 이내, 최대 2건, 건당 1억원 이내)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중견 50% 이내, 최대 1.5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중견 50% 이내, 최대 2억원)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114 🌐 www.energy.or.kr

7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분야

- 지역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로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 (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름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최대 25~50% (컨소시엄 구성별 상이)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114 🌐 www.energy.or.kr



7

한국산업은행

1.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2. KDB Global Challengers 200
3.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4.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3종)
5. KDB 동반성장대출



1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지원대상

- 감염병, 자연재해, 외교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비영리법인 포함, 대기업 계열회사·부실기업·공공기관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 600억원, 중견기업 1,200억원 이내 자금 대출
- ※ 일시/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 ※ 우대금리 : 원화 △0.90%p 이내 (외화 △0.20%p 이내)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2 KDB Global Challengers 200

☑ 지원대상

- KDB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 선정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내용

- ① 금융지원 : 전용자금 2.5조원, 금융수수료 우대
- ② 비금융지원 : M&A, 채권발행 등 IB수요 발생시 전문 자문서비스 제공 등

구분	상세내용
전용자금	2.5조원 규모(용도 : R&D, 설비투자, M&A 등), 금리 우대(0.5~1.0%)
수수료 우대	무역금융 : 송금수수료, 전신환 면제 현물환거래 : 전신환 면제, 최저수수료율(0.3원) 적용 등
채권발행	회사채 발행 공모채 투자자 모집 지원
투 자	우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
M&A	M&A 사전상담 및 매수·매도 관련 자문 제공
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배정 및 IB부서 연계 최적의 솔루션 제공
연 수	자본시장 세미나, 외환파생 세미나 연수 등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중견기업지원시책

3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경영 컨설팅 관련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가 네트워크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Pre-M&A, PMI 등 M&A관련 컨설팅,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등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4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3종)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다양한 재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3종) 제공
 - ① 포스트 코로나 사업재편 불업 시설자금 : 사업재편 추진, R&D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자금 전용 상품
 - ※ 일반 상품 대비 최대 1.0%p의 금리인하 제공
 - ② 포스트 코로나 경영안정화(Step-up) 지원자금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게 초기 금리부담을 줄여주고,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Step-up 방식의 운영자금 전용 상품
 - ※ 최대 3년 만기 차입 가능,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납입(차입 초기 한정)
 - ③ 포스트 코로나 재무안정 투자자금 : 재무안정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주식 및 주식 관련채(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를 매입하여 자본확충 및 금융비용 경감 등 재무안정을 지원하는 투자 상품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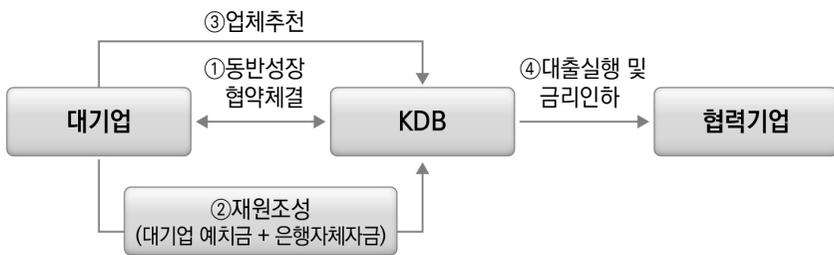
5 KDB 동반성장대출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협약체결에 따라 재원을 조성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예탁금 이자수익분을 감안하여 금리 감면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8

한국수출입은행

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3. 수입금융(수입자금)
4.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5.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6. 해외사업자금대출
7. 해외투자자금대출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10.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3416, 3468

2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3 수입금융(수입자금)

지원대상

-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단,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 / 에너지 물품은 포함)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금금액의 80% 이내(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4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액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단,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기업별 대출한도 500억원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5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 인수 및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6 해외사업자금대출

☑ 지원대상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7 해외투자자금대출

☑ 지원대상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에서 사업의 특성, 자금 실소요기간을 감안한 기간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30%, 5년 미만 설립초기 및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및 영업부 : ☎ 02-6252-3416, 3468

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금융서비스
 - ① 통화전환옵션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② 선물환거래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해외투자정보(국제지역정보, 산업경제정보, 해외투자통계) 제공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 02-6252-3416

10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금융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 제공,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수출성장자금 취급시 수출실적 인정한도 확대
- 맞춤형 비금융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 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 02-6252-3418



9

IBK기업은행

1. 강소기업대출
2. 동반성장협력대출
3.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4. 시설투자대출
5.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6. 토지분양협약대출
7.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



1 강소기업대출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문	대상기업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공인회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일시상환 1년 이내, 기한연장 시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2 동반성장협력대출

☑ 지원대상

- 협약기관과의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신용등급 BB+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 단, 전액담보(80% 이상 신용보증서 포함)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제한이 없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중소기업지원

▶ 3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 지원개요

-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동일기업 당 최대 250억원 이내, 일시상환(3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운전자금)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로 동일기업 당 최대 30억원 이내, 일시상환(1~3년, 연장시 대출기간 포함하여 5년 이내), 분할상환(5년 이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 4 시설투자대출

☑ 지원대상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대상기업에게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최장 15년)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5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로부터 보증추천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90% 부분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상 보증기한 이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6 토지분양협약대출

☑ 지원대상

-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분양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토지분양대금 납부대상 기업 : 토지분양계약금(토지분양대금의 최소 10% 이상)을 납부하고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의 대출추천서(또는 협조문)를 받은 기업
 - 사업장 신축기업 : 건축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를 신규 분양(전매포함)받고 토지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 7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

☑ 지원대상

- 환경안전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동일기업 당 최대 200억원 이내, 일시상환(3년 이내, 연장시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운전자금)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로 동일기업 당 최대 40억원 이내, 일시상환(3년 이내, 연장시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10

신용보증기금

1. 유동화회사보증
2. M&A보증
3. 매출채권보험
4.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1 유동화회사보증

☑ 지원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에 기초하여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

☑ 신청자격

- 중소·중견·대기업(기업별 등급 자격 상이)

☑ 지원내용

- 최대한도 중소 250억원, 중견 1,050억원, 대 1,500억원
 - ※ 신용등급별, 매출별, 자기자본 및 차입금별 한도 상이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 ※ 후순위증권 : 유동화자산 편입금액 × 연율 0.1% ~ 1.8%(신용등급별로 차등)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중견·대기업) : ☎ 02-2014-0221~7 🌐 www.kodit.co.kr

2 M&A보증

☑ 지원개요

- 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 → 회수 → 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 유도를 위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신청자격

-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소요자금 지원한도(보증신청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50%~80% 이내),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배) 및 피인수기업의 인수가치한도(인수에정인 피인수기업 지분의 가치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www.kodit.co.kr

3 매출채권보험

☑ 지원개요

- 판매기업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보험가입한도 최고 100억원, 보험료율 0.1~5.0%
※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www.kodit.co.kr

4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 지원개요

-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신청자격

- 중견기업은 구매기업 대상으로 운영

☑ 지원내용

- 구매기업 최고한도 30억원
※ 구매기업의 신용도, 업종,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www.kodit.co.kr



11

기술보증기금

1. 기술보증제도
2. 기술이전제도
3. 지식재산 공제제도
4.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1 기술보증제도

☑ 지원개요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지원

☑ 신청자격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인 중견기업
 -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등이 해당(건설업 및 도소매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 최고한도(30억원)를 초과하는 보증한도 부여 가능

대상기업	개 요	초과한도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70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영위기업 및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설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받은 기업	100억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산업 부문별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00억원
M&A 추진 기업 ('22년 시행예정)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M&A 인수기업	200억원

※ 초과한도는 기보와 신보의 보증잔액(유동화회사보증 포함)을 포함하며 보증연계투자 제외

- 보증상품별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기업별 상이)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 054-606-7468 🌐 www.kibo.or.kr

2 기술이전제도

☑ 지원개요

-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 중견기업은 기술 수요기업 대상으로 운영

☑ 지원내용

- 업무협약 체결, 기술도입부터 양산자금(운전, 시설)까지 금융 지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 051-606-7644 🌐 tb.kibo.or.kr

3 지식재산 공제제도

☑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IP 리스크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공제 가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가입자당 최대 3건, 납부 최고한도 5억원/건
- 보증료 감면, 기술신탁수수료 할인, 무료 자문서비스,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우대 등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사업부 : ☎ 051-606-7535 🌐 ipmas.or.kr

4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 지원개요

- 기보가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 신청자격

- 중견기업은 구매기업 대상으로 운영

☑ 지원내용

- 상세 내용은 6월 경 공고 예정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팩토링추진단 : ☎ 051-606-7353 🌐 www.kibo.or.kr



12

한국디자인진흥원

1. 제조기업 디자인인력 지원사업
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1 제조기업 디자인인력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디자인 전문회사

☑ 지원대상

- 직전년도 사업 선정에 따라 채용 후 고용 유지한 디자인 인력(최대 2개년, 중급 이상) 또는 당해연도 사업에 선정된 후 신규 채용한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지원내용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 1년간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 ☎ 031-780-2114 🌐 www.kidp.or.kr

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제조기업에 디자인 주도의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컨설턴트 통합 모집

☑ 지원대상

- 직전년도 사업 선정에 따라 채용 후 고용 유지한 디자인 인력(최대 2개년, 중급 이상) 또는 당해연도 사업에 선정된 후 신규 채용한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지원내용

-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건당 1백~3백만원 지원
- 홍보 영상 제작 및 PPL 지원, 라이브 커머스 연계 지원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 ☎ 031-780-2114 🌐 www.kidp.or.kr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1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응·대비 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 신청자격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 단,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이 과반수일 것

☑ 지원내용

-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新시장(제조국) 특허대응전략수립 중 선택	5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5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100백만원 (1회 지원시)
	라이선스 협상전략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0백만원

(선택형 추가선택)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 자문 서비스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특허 무효자료(논문 등 비특허문헌) 조사 및 기술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 권리행사(개별대응 전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사전 준비	특허 피침해분석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분쟁 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47백만원

(선택형 추가선택)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 자문 서비스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특허 무효자료(논문 등 비특허문헌) 조사 및 기술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현금 10%, 현물 20%),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02-2183-5800 🌐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 지원개요

- 해외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상표·디자인 개별대응

- 지원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현금 및 현물부담 30~50%
 - ※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지원(협약)기간 : 최대 3개월
 - ※ 단, O2O전략 유형은 기본 3개월 협약체결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까지 협약기간 연장 가능
- 유형별 지원 세부내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권리 보호	해외현지 권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0백만원	
	해외 온라인플랫폼 보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보호 종합 전략 지원	13백만원	
	콘텐츠IP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전략 지원	40백만원	
분쟁 지원	무단권리선점 (패스트트랙)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점에 대한 법적·비법적(협상 등)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상표피해 대응		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등 상표피해기업에 대한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O2O 전략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기업의 해외 현지 오프라인 침해현장조사,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6백만원
	형태모방 대응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40백만원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40백만원

☑ 상표·디자인 공동대응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현물 30%(현금부담 없음)
 - ※ 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지원(협약)기간 : 최대 4개월
- 다년도 연속지원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공동대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체에 대하여 3년간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 유형별 지원 세부내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분쟁 지원	무단권리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무단 권리 선점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60백만원
	상표피해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형태모방대응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IP-NAVI(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K-브랜드 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4번 ✉ kbrand@koipa.re.kr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중국, 아세안 6개국 및 대만 주요 오픈마켓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방지

☑ 지원분야

- 중국 : 알리바바그룹(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1688, 알리바바닷컴, 알리익스프레스)
- 아세안 6개국 및 대만 :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 ※ 아세안 6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 지원대상

- 해당국가에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을 보유한 국내 기업

☑ 지원내용

- 모니터링 : 대상 쇼핑몰 내 우리브랜드의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 및 결과 안내
- 차단신청 : 위조상품 유통 정보가 확인된 경우, 유통차단을 위해 해당 기업의 지재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근거로 차단신청 진행

☑ 문의처

- 문의처 : 해외전략실 ☎ 1600-8145, ARS 5번 ✉ global@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2.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사업
3. R&D 특허·표준 연계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지원개요

-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 지원

☑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지원내용	기간	단가	기업부담금 (중견기업)	
				현금	현물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등 전략 제공	20주	100	26	14
R&D수행 IP전략형	특허 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 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12주	60	16	8
IP-허가전략 연계형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전략 수립	24주	120	32	16
밸류업 IP-R&D	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R&D 사업관리 시스템 : biz.kista.re.kr/ippro

2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사업

☑ 지원개요

- 시장 선도를 위한 제품 중심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지원

☑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원내용	지원 기간	정부 지원금	기업부담금	
	전문위원	협력기관				현금	현물
특허·디자인 개발(PI)	특허	특허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20주	120	24	24
	디자인	제품 디자인					
특허·브랜드 개발(BI)	특허	특허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디자인	브랜드					
특허·서비스 개발(SI)	특허	특허	시장·사용자·경쟁사 IP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방법특허·UX/UI 디자인 개발 전략지원				
	디자인	UX/UI 디자인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R&D 사업관리 시스템 : biz.kista.re.kr/ippro

3 R&D 특허·표준 연계 지원

지원개요

- 국제표준 획득 및 표준특허 확보가 가능한 산·학·연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여 표준 특허 확보 가능성 극대화

지원분야

과제 유형		지원 대상 과제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 국제표준 연관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표준특허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수행하는 과제
일반 기업· 기관	R&D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
	표준화	• 정부 표준화 사업* 과제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정통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유망기관 (전문기관 육성)		•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한 표준특허 유망기관의 R&D 및 표준화 과제 * 표준전문가(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또는 표준·선언특허 보유

신청자격

-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R&D·표준화 수행중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 전담팀이 특허·표준을 분석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수행, 특허 창출, 표준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 제공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 biz.kista.re.kr/epcenter



15

한국자산관리공사

1.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지원개요

-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보증)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담보 :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지원내용

- 담보부동산 평가를 통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후, 신용공여약정 체결 및 지급보증서 발급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 1588-3570 ☒ oncorp.kamco.or.kr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 지원개요

-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만 가능)
- 자원 : 부동산(영업용, 비영업용), 동산(선박, 항공기) 등

☑ 지원내용

- 자산매입 후 보유 또는 임대, 민간공동투자,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 1588-3570 ☒ oncorp.kamco.or.kr



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내일채움공제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1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재직자' 및 '채용 기업'
 - 재직자 : 중견·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핵심인력, 연령제한 없음)
 - 기업 :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재직근로자가 사업주와 1:2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5년간 납입시 5년간 2,000만원 이상 공제금 적립
 - ※ (중소·중견)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중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 1588-6259 🌐 www.sbcplan.or.kr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재직자' 및 '채용 기업'
 - 청년재직자 :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34세 이하) 근로자(핵심인력)
 - 기업 :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3,000만원 이상(+연복리) 공제금 적립
 - ※ (중소·중견)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중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 1588-6259 🌐 www.sbcplan.or.kr

3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 지원개요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 및 인재 양성, 장기재직 유도

☑ 지원대상

- 학생 : 현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 예정자(채용조건형),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채용조건형 영마이스터)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학생 : 재교육형 일반 65% 그 외 유형 100% 국고 지원
- 대학 : 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국고 지원(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17

기타기관

1. (특허청) 지식재산권 수수료 감면제도
2.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3.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8.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9.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1 (특허청) 지식재산권 수수료 감면제도

☑ 지원개요

-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감면

☑ 신청자격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감면대상자		감면율(최초 3년간)	감면율(4년차 이후)
· 개인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만65세 이상	85%	50% (~존속기간)
	그 외	70%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하는 자		50%	
· 중소기업		70%	30%(~9년차)
· 중견기업		30%	
· 중소·중견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20%	20% 추가(4~6년)

☑ 문의처

- 특허청 : ☎ 대표번호 1544-8080 🌐 www.patent.go.kr

2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 지원개요

-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 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 지원

유형	설명
관리대상화물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부두직통관화물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적재지검사수출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 문의처

- 관세청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www.customs.go.kr

기
타
기
관

3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 지원개요

- FTA 활용 중소 수출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증 대비 업체별 맞춤형 지원

☑ 신청자격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인면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를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최대 200만원, 매출액 구간별 차등 지원

☑ 문의처

- 관세청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www.customs.go.kr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지원개요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창출장려금(5건)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4건) :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3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 장년고용안정지원금(2건) :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제도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1건) :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각 고용보험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 www.ei.go.kr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신청자격

-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
 -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사회현안 해결부문에 한함)
 - ※ 초기중견기업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데이터·AI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 데이터 구매 최대 16백만원, 데이터가공(일반) 최대 45백만원, 데이터가공(AI) 최대 70백만원 국고 지원

☑ 문의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 ☎ 1833-2246 🌐 www.kdata.or.kr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 지원개요

-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업무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 지원대상

- 해당 분야 기술력·장비 등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지원내용

-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수당 등 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 재직자(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고숙력 일학습병행)
 - ※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고객센터 1644-8000 🌐 www.hrdkorea.or.kr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지원개요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신청자격

-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50% 이하 지원
- ※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 032-590-5071

8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등

☑ 지원내용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중소 80%, 중견 60% 국고 지원)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 02-3406-1103

9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신청자격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필수 :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Package, Upgrade, Starter, Untact)
- 선택 :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적권 및 계약)
 - ※ 상기 컨설팅(필수+선택)은 최대 10MD까지 지원 가능, 매출액 구간별 차등 지원

☑ 문의처

- FTA종합지원센터 : ☎ 1380 🌐 www.okfta.or.kr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정책
② 사업



중견기업 특례(요약)

1 분야별 세제 특례

☑ 투자

구 분		내 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사업용 자산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신성장사업화시설	중소 12%, 중견 5%, 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소 16%, 중견 8%, 대기업 6%
	투자금액 증가 시	3년 평균 투자금액 초과분의 3% 추가공제
영상콘텐츠제작비용 투자세액공제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3%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조업 중소 70%, 중견 50%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중소·중견 50%

☑ R&D

구 분		내 용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25%
	당기분 방식	중소 25%, 중견 15~8%, 대기업 0~2%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중소 30~40%, 중견 25~40%, 대기업 20~30%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기술이전과세특례		(기술이전소득) 중소·중견 50%, (기술대여소득) 중소·중견 25%

☑ 인력

구 분		내 용
근로소득증대세제	근로자 임금 증가	임금 증가분의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분의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손금 산입		중소·중견 허용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중소 30%, 중견 15%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근로자 등	인당 중소 1,100~1,300만원, 중견 800~900만원, 대기업 400~5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인당 중소 700~770만원, 중견 45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 및 위기지역 중견 법인세 일부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공제		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상속

구 분	내 용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중견 (5억원 공제,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 10~20% 특례세율 적용)
기업상속공제	중소·중견(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정상거래비율	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30%

기타

구 분	내 용
수출 중소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비중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적용
특허보세구역 특례	특허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부여

※ 상세 내용은 [중견기업 지원시책 - 1. 조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야별 지원 특례(세제 外)

☑ 수출·판로

구 분	내 용
공공기관 발주 이력개발사업 참여 특례	제외 허용 (평균매출액등 1.5천억원 미만, 진입 3년 이내)
공공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	참여 허용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 1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75 2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50 3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25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	참여 허용 (분야별 선도기업 육성, 해외지사화 사업 등)
하도급대금 지급시 수급사업자 지위★	지위 인정 (업종별 연간매출액 800~3,000억원 기준 상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사업금액의 하한★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 5년 초과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5년 초과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 80억원 이상

☑ R&D

구 분	내 용
기술보호지원 특례	참여 허용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진입 3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중소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연구개발성과 대상 기술실시계약 체결	중소·중견 우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참여 허용
R&D사업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징수	비율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인력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참여 허용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허용
전역예정자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 허용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 허용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산업기능요원 배정(보충역)★	참여 허용

기타

구 분	내 용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비상장)
매출채권보험 특례★	참여 허용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가업승계지원 특례	참여 허용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명문장수기업 특례★	참여 허용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참여 허용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진입 3년 이내)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 특례	설립 허용 (중견기업 지위 유지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특례	입주 허용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무역보험 중소·중견 특별지원	지원 허용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

발 행 일 2022년 4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 203-436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 3275-2994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2022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② 사업